#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통계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케이씨에이</td><td>평가<br>기간</td><td>2025.04.01.<br>~<br>2025.06.27.</td><td>평가<br>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<br>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<br>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<br>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<br>☑ 1억원 이상 (전체 9개시스템)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<br>(사업)명</td><td colspan="3">통계청 통계자료시스템(9종)<br>(사망원인선정시스템)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<br>변경 일정</td><td>2015.03.24 ~<br>10.31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<br>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인구 정책 및 보건.의료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사망원인통계 작성<br>• 1982년 최초 작성하여 2012년 보건복지부의 영아・모성・사산조사가 이관<br>•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망에 대한 원사인 선정은 유일하게 통계청에서 수행 중이며, 사망원인에 관한 최종자료로 활용됨.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50만명 이상 개인정보 연계처리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72백만원<br>(VAT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통계청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• 통계법 제7조의2(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운영중</td></tr>
<tr><td>신기술<br>유형</td><td colspan="4">해당 없음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의학용어사전 매치<br>- 텍스트(한글)로 입수된 사망진단서 용어를 의학용어사전에 매치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KCD) 코드로 변환<br>• 자동 원사인 선정<br>- 사전에 의해 변환된 KCD 코드 간에 국제 지침인 인과관계 및 수정준칙 등을 적용하는 로직을 구현하여 원사인 선정<br>- 인과관계(Causal Relationship) : 질병간 인과관계가 합당한지 판단<br>• 행정자료 연계<br>- 관련 행정자료를 사망신고 자료에 연계·분석하여 임시 선정된 사인을 추가로 보완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<br>변경내용<br>(변경인<br>경우)</td><td colspan="6"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사망원인 관련자<br>가칭></td><td>추정 500,000</td><td>이름:필수, 생년월일:필수, 집연락처:필수, 집주소:필수, 기타:필수(성별, 통계목적고유번호)</td><td>없음</td><td>사망원인 선정시스템 운영</td></tr>
<tr><td>태아영아모성정보<br><가칭></td><td>추정 1,000,000</td><td>이름:필수, 생년월일:필수, 집주소:필수, 기타:필수(성별, 통계목적고유번호(주민등록번호), 통계목적고유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통계목적고유번호(여권번호) )</td><td>없음</td><td>태아영아 사인 확인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</td><td colspan="4">1. 내부시스템인 인구동향조사시스템으로 부터 매일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사망형태별 관련자(의사, 신고인)의 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을 복제함.<br>2. 사망원사인 검사 업무는 사망원인조사로부터 Upload한 태아사망자료를 참조하여 태아의 원사인 선정을 수행하며, 모성의 생년월일, 연령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.<br>3. 내부시스템인 인구동향조사시스템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대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사망원인을 세분하여 보완하고,<br>4. 자료를 수집하였던 인구동향조사시스템에서 SR요청시 사망원사인선정의 테이블 연계로 데이터를 가져가며, 사망관련자, 사산/영아 모성정보는 영구보관함.<br>5. 사망자에 대한 행정자료 송부요청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며, 건강보험의 경우는 대용량으로 자료수집 시스템으로 수집하여 자료를 Upload하며, 기타 행정기관의 경우는 파일로 수신하여 Upload하도록 처리하고 있음.<br>다만, 암센터의 경우 사망자 및 살아있는 자를 포함하여 보냄.<br>6. 영아, 태아인 경우 다양한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원인 보완조사로부터 모성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받아 Upload를 수행함.<br>7. 행정자료 조회시스템을 사망자 정보만을 조회하지만, 암센터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의 환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.<br>8. 관리자는 행정자료를 삭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망원인 선정작업 종료 후, 2년 보관하고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음.<br><br>■ 개인정보 흐름도 : [첨부-1] 총괄 개인정보흐름도 참조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영향평가기준</td><td rowspan="2"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지표추가</td><td colspan="3">▪ 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지표삭제</td><td colspan="3">▪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은 “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시스템”에서 평가함으로써 본 평가에서 제외함.<br>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: 6개 분야(30개 항목)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</td></tr>
<tr><td>지표변경</td><td colspan="3">▪ 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 colspan="4">▪ 개인정보 보호법(시행 2025. 3. 13.)<br>▪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시행 2025. 3. 13.)<br>▪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시행 2025. 4. 11.)<br>▪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시행 2023. 9. 22.)<br>▪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시행 2025. 4. 11.)</td></tr>
</table>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▪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(2025. 4.)<br>▪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시행 2024. 10. 31.)<br>▪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4. 4.)<br>▪ 개인정보보호 최신 트랜드 반영 : 해당없음 |
|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 | | ▪ **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:**<br>- 사망원인 선정시스템은 관련 행정자료를 사망신고 자료에 연계·분석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①항제3호 및 제34조의2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)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.<br><br>▪ **대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:**<br>-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주식회사 마리누스<br>※ 본 시스템의 인프라(서버, 시스템 소프트웨어, 스토리지) 관리, 백업 및 복구 관리, 보안관리, 재해복구관리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함.<br><br>▪ **"부분이행", "미이행"으로 평가된 사항 관련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:**<br>-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, 관리·감독 활동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할 수 있음.<br>-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파일의 대장관리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등이 미흡할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음.<br>-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고지하지 않을경우,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.<br>-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에 대하여 처리시스템명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음.<br>- 보안서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서약 내용이 누락되면,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의도치 않은 법규위반 및 개인정보 오남용 위반 소지가 있음.<br>-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•노출의 위험 발생 우려<br>- 장기 미 접속 시 계정 잠금,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될위험이 있음.<br>- 성명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함에 제한이 있으며, 식별할 수 없는 접속기록은 개인정보 유출시,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여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, 정보주체에게 후속보호 조치를 수행할 수 없음.<br>- DB에 직접 접속하는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상세한 접근기록 관리부재 우려<br>- 의무보관기간 미준수시 관리책임과 접속 기록을 덮어쓰기 방지매체를 이용한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발생과 접속 기록의 훼손으로 책임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.<br>-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비의도적인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증가함.<br>- 재해-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기적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음. |
| 위 | 주요 | 1.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조치 개선 |

| | | |
|---|---|---|
| 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|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| - 개인정보취급자 관리•감독 강화<br>- 개인정보 파일대장 현행화<br>- 개인정보 파일 등록 요청<br>2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선<br>- 개인정보의 동의, 비동의를 분리하여 공개<br>- 시스템별 위탁내역 고지<br>- 수탁사 관리/감독 강화<br>3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선<br>- DB 사용자들의 세션타임아웃 설정<br>-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기능 구현<br>- 개인정보 접속기록 처리개선<br>- DBMS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체계 점검<br>-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강화<br>- 단말기 화면에 보호체계 적용<br>- 주기적인 재해재난 훈련 실시 |
| |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| 가.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 적합성<br>나.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가 즉시 파기<br>다.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제3자 제공 현황 확인 |
| 평가결과 | | 가.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항목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<br>• 대상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제1장)은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시스템에서 평가하여 평가에서 제외함.<br>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6개 평가항목 중 3개의 항목을 이행(50%) 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17%)하고 2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(33%)하고 있음<br>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25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9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의 항목을 이행(52%) 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8%)하고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(4%)하고 있음<br>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36개 평가항목 중 21개의 항목을 이행(58%) 하고 있으며, 6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17%)하고 있고,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(3%)하고 8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<br>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는 6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<br><br>나. 대상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<br>•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분야에서 1개 항목을 부분이행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파일 관리분야에서 2개 항목을 미이행하고 있고, 개인정보 처리방침분야에서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.<br><br>라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<br>• 개인정보 수집분야에서 1개 항목을 미이행하고, 위탁분야에서는 2개 항목을 부분이행하고 있고, 보유분야, 이용·제공분야 및 파기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|

| | |
|---|---|
| | 관리하고 있음.<br><br>마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<br>• 접근권한 관리분야는 2개 항목을 부분이행하고 있으며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분야는 3개 항목을 부분이행하고 있으며,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분야는 1개 항목을 미이행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분야는 1개 항목을 부분이행하고 하고 있으며, 접근통제분야, 개인정보의 암호화분야,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분야, 물리적 접근방지분야, 개인정보의 파기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. |

[첨부-1] 총괄 개인정보흐름도

